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9 선고 2021나1006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9 선고 2021나1006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1. 25 선고 2018가합42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아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정항

피고, 항소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태

변론종결 2021. 7. 15.

판결선고 2021. 9. 9.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1. 25. 선고 2018가합42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9,6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원고는”부터 제14면 제6행의 “없다”까지를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하수도 관련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도로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당심에서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2,033㎡ 중 1,559㎡만이 도로로 편입된 내용의 2005. 8. 1.자 경전선 K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중 Q간 및 R간(57km400)에 대한 실시계획(건설교통부 고시 L), ② 같은 내용의 2015. 5. 20.자 경전선 K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교통부 고시 S), ③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인근에 대한 2016. 8. 5.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④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 등(을 제24 내지 27호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이 사건 분할전 토지 2,033㎡ 중 위 1,559㎡를 제외한

부분)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라고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위 K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있기 전부터 일반 공중이 사용해왔고, 1980.경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이미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갑 제30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전체가 차도, 보도 기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¹⁾ (따라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1,559㎡만이 도로로 편입되는 내용의 위 K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별개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전체가 위 1980.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피고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그 전체가 위 1980.경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도로로 편입된 정비기반시설이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중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도관을 이설할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수도관을 이설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그 관리권을 취득하여야 할 토지를 대체부지로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체부지 매수비용을 부담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남양우, 판사 박규도, 판사 김윤석

1)구 도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